##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2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이종성・김미애・이종배

권명호 · 김용판 · 정경희

김석기 · 정진석 · 최승재

전봉민 · 강기윤 · 윤창현

김형동 · 김영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남비(NIMBY,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관련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고 지가가 저렴한 도심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허용을 통해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 1항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제한)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	
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	
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u>.</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의 형질변경

가. ~ 마.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의2. ~ 9. (생 략)

② ~ ① (생 략)

\_\_\_\_\_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노인복지법」에 따른</u> 노인복지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u>아. 「아동복지법」에 따른</u> 아동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① (현행과 같음)